

# 고성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655호)

##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 08. 25. 김향숙 의원 등 7인  
나. 회 부 일 자 : 2023. 09. 05.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2023. 09. 13. 기획행정위원회 상정·원안가결

### 2. 제안이유

고성군 내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고성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군수의 책무 및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및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라. 우선주차구역의 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차량의 이동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나. 입법예고: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3-2655호  
- 예고기간: 2023. 8. 29.(화) ~ 2023. 9. 4.(월) [6일간]  
-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 의견있음[기획예산담당관-13458(2023. 9. 4.)]

## 5. 본문: 붙임과 같음

## 6. 전문위원 검토요지

### □ 제정 취지(필요성)

- 국가유공자 예우문화 확산을 위해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 주요 내용 검토

-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안 제1조~제3조)
  - 조례 입법 목적 규정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을 정의함.
  -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촉진 시책 추진을 군수의 책무로 규정함.
- 적용대상(안 제4조)
  -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 탑승 시 우선주차구역 이용하도록 규정
  - 관련 법에 따른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상이등급판정자를 대상으로 적용 범위를 특정함.
-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안 제5조)
  - 고성군 및 소속기관의 청사, 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설치할 수 있고,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설치 권장할 수 있도록 함.
- 우선주차구역 설치기준 및 방법(안 제6조)
  - 표준조례안에 따라 주차단위구획의 총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 설치함.
  - 집행부 의견: 주차단위구획의 총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
  - 타 지자체 현황: 상황에 따라 설치기준을 달리 정함
    - 100대 이상 주차장, 1% 이하: 서울시 용산구, 하남시, 남양주시, 창원시 등
    - 100대 이상 주차장, 최소 1개 이상: 함안군
    - 50대 이상 주차장, 최소 1% 이하: 서울시 성북구

- 30대 이상 주차장, 최소 1개 이상: 부산광역시, 속초시, 원주시, 공주시
- 우선주차구역 식별을 위한 바닥 면 주차구획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를 규정
- 우선주차구역의 이용과 차량의 이동 조치(안 제7조~제8조)
  - 국가보훈부장관 발행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 소지하여 이용하도록 하여 대상자가 우선 주차할 수 있도록 함.
  - 별도 과태료 부과 근거가 없음에 따라 이용 대상이 아닌 자동차의 주차에 대해서는 이동 주차를 권고하도록 규정함.
-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

## □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고성군이 설치한 공공시설 등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의 주차 편의를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국가보훈부에서도 일상생활 속에서 국가유공자를 존중하는 보훈 예우문화 확산을 위해 조례 제정을 권장하고 있고 나라를 위해 공헌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고성군민의 애국심 고취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므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8조 차량의 이동 조치는 우선주차구역에 대상이 아닌 군민 등이 주차할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성숙한 군민 의식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국가유공자를 예우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취지와 운영사항 등의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위원회 회의록 기재)

8. 토 론 : 없음.

9. 심사결과 : 2023. 9. 13. 원안가결